

제421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17일(금)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 현안질의 1

(16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입법심의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근 입법심의관입니다.

(인사)

입법심의관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질의

(16시23분)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안질의는 12·3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난맥상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석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현안보고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지난 2025년 1월 15일 대통령의 체포 등 엄중한 상황에서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전원위원회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2024년 12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안은 2025년 1월 13일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규선 상임위원입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이석준 사무총장입니다.

조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윤채완 정책교육국장직무대리입니다.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입니다.

이수연 차별시정국장직무대리입니다.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입니다.

송호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상임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따로 현안보고 없으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현안보고는 사무총장이 저를 대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석준입니다.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고 5쪽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및 위원장 성명, 주요 집회의 모니터링 등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요약하였습니다.

5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현안은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인권위원 3인의 명의로 발의되었고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와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는 하지 않되 계엄 상황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안입니다.

인권위원 5인의 명의로 2025년 1월 8일 제출된 이 안건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은 12월 3일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입니다.

위원회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1일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여 계엄의 해제가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신중한 대응 노력 덕분이라는 점,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강조한 바 있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대규모 집회 현장을 방문하여 집회 현황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2월 7일과 12월 14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2024년 12월 22일 남태령 인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집회 참가자의 트랙터 집회,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대통령 체포 반대 및 찬성 집회 등 주요 집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지난 13일 개최하려다 무산된 인권위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김종민·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안건을 제출했는데요.

위원장님, 이 권고안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정진욱 위원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정진욱 위원 제가 일부 읽어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장관이나 군 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엄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이 권고안은 윤석열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권고안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앞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현 상황에서……

○정진욱 위원 아니,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셨지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정진욱 위원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 헌법 77조 1항이 요구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밝힐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판단 못 하십니까, 위원장님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판단할 수 있지만……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권위가 이 권고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결재가 필요하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그렇지요.

○정진욱 위원 그 결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정진욱 위원 그냥 무조건 아무 권고안이나 오면 다 올립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회가 되지 않는 이상……

○정진욱 위원 뭔가 지금 인권위가 인권위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본인들을 착각하면서 사법적 해석 이런 걸 하는데……

지난 16일, 어제입니다. 인권위 회의 상황에서 이충상 상임위원님, 인권위 직원이 ‘인권위 노조가 반론을 신청한다’ 이하자 이충상 위원님께서 ‘대법관 회의를 하는데 누가 발언을 하고 신청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관이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아닙니다만 이치는 똑같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치가 똑같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법관 회의에서……

○정진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법관 회의에서 법원 일반 직원은 발언권 없습니다.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인권위 회의를 대법관 회의라고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대법관 회의라고 안 했는데 이치가 똑같습니다.

○**정진욱 위원** ‘대체 대법관 회의를 하는데 누가 발언을 하고 누구에게 신청권이 있나’ 이렇게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맞습니다. 상임위원 회의에서는 상임위원만 발언권이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마치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님들만 발언권이 있고 사무총장·차장은 발언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진욱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이충상 위원, 지금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이런 걸 보고 요즘 브레인 로트(Brain Rot), 뇌가 썩었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0일에 안건을 상정하려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날 일단은 저희가 지난 13일 날……

○**정진욱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일단은 이것이 의사일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안건 상정 여부도 위원님들 의견 여부를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말씀할 때도 의견을 들어서 한다 하시다가 결국 못하신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정진욱 위원** 김종민 위원님은 이 권고안 전에 서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제, 16일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사퇴했습니다. 또 강경혜 비상임위원은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권고안이 가진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상정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세요. 만약 상정한다면 이건 내란에 동조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인권위 위원장을 맡아서 그동안에 본인이 쌓아 온 사회적 신망과 존경을 다 잃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하지 마세요.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이 권고안 누가 썼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썼습니다.

○**정진욱 위원**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하면서 내란을 선전 선동하고 사실상 내란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김용원 위원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오늘 저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정진욱 위원** 제 시간 멈춰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은……

-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김용원 위원님, 지금 저한테 발언권이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 정진욱 위원 카톡 검열이요? 누가 카톡을 검열합니까?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국민을 거짓말로써 속이고……
- 정진욱 위원 지금 여기서 가짜뉴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권위 위원이 운영위에 나와서……
- 신장식 위원 마이크 빼 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국민을 거짓말로써 속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고민정 위원 자료 제출해 보세요. 어디서 카톡 검열이라는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까!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말 지어낸 적 없습니다.
- 고민정 위원 말 지어내지 마세요, 카톡 검열이라고! 자료 제출하세요!
- 정진욱 위원 김용원 위원님!
발언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마이크를 꺼 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전용기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현재 가지고 있어요.
- 전용기 위원 그러면 읽어 보세요.
- 모경종 위원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검열입니까?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게 카톡 검열 맞아요!
- 전용기 위원 그게 맞다고요?
- 고민정 위원 그 뉴스가 가짜라고! 가짜뉴스를 어디서 유포하고 있어!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여기 그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 전용기 위원 그게 검열이라고 했어요?
- 고민정 위원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확인하고 오세요!
- 서미화 위원 지금 가짜뉴스 퍼트리려 나온 거예요? 김용원 위원님! 지금 거짓말하러 나온 겁니까?
- (장내 소란)
- 전용기 위원 검열이라고 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검열이라는 용어를 써야 검열인 겁니까?
- 전용기 위원 그러면 뭐가 검열인데요? 헌법상 검열이 뭔데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검열이 뭔지 모르세요!
- 전용기 위원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검열이 뭔데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국민들의 카톡을 살펴봐서 거기에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나……
- 고민정 위원 확인하고 오세요!
- 이소영 위원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 고민정 위원 어디 국회에 와서 가짜뉴스를……
- 위원장 박찬대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고발하겠다. 그게 카톡 검열 아니고 뭘까요?
- 고민정 위원** 가짜뉴스 그만하세요! 거짓말쟁이!
-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 김용원 상임위원!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게 카톡 검열이 아니고 뭐예요?
- 전용기 위원** 그래요? 그게 검열이라고요?
- 위원장 박찬대** 잠깐, 잠깐.
- 모경종 위원** 기본적으로 팩트체크도 못 하고 나와 가지고.
- 고민정 위원** 팩트체크부터 하세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팩트체크 잘 하고 있어요.
- 모경종 위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김용원 위원님에 대해서 퇴장을 시키든 경고를 해 주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상임위원님, 국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필요한 답변만 하시는데 그렇게…… 국회의원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욱 위원** 제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 말씀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김용원 위원님.

김용원 위원께서 카톡에 검열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 카톡 내용을 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 고발하는 것을 카톡 검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을 때 그게 범죄행위에 해당했을 때 그것을 고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검열이 아니에요. 검열의 의미를 본인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검사도 하시고 법률가로 살아오신 분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정말로 놀라웠다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반인권적인 인물이 지금 인권위에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인권위원회에서 이충상 위원님처럼 사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가장 인권적인 사람입니다.
- 정진욱 위원** 질문하지 않았어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리고 내란선전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민정 위원**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라고!
- 정진욱 위원** 그만하세요.
-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경고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내란선전죄는 형법 90조에 규정이 잘 되어 있고요.
- 모경종 위원**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라고요!
-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 정진욱 위원** 잠시 퇴장시키시지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내란선전죄는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경우

에 성립되는 것이지 이미 지나간 내란을 정당화한다고 해서 내란선전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장내 소란)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국민을 겁박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할 것을, 한 것이 발견되면 고발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검열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그런 행위를 보셨어요?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국민을 겁박하는 거짓말, 내란선전죄로 국민을 겁박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말로 겁박을 하는 겁니다.

○전용기 위원 그런 행위를 보셨냐고요. 아니, 그런 행위를 보지도 않아 놓고 본인이 뭔데 검열이다 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김용원 위원 퇴장을 좀 명해 주십시오. 경고를 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 그런 선전 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지금……

자,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일단……

전용기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내란선전죄는 법조문 보면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지 이미 지나간 내란죄를 옹호한다고 해서 내란선전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진욱 위원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뭐가 이미 지나갔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내란이 진행되기는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놔가 썩었습니까?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김용원 위원 경고해 주십시오. 퇴장을 명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김용원 위원님 퇴장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님들, 일단 잠깐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용원 위원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퇴장하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박찬대 잠깐 일어나 주세요.

○고민정 위원 그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찬대 잠깐 일어나 주세요, 빨리.

○윤건영 위원 퇴장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지금 김용원 위원님은 의도적으로 본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계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경고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뒷자리로 좀 앉아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지금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위원장께서 자리 지정권까지 가지고 계시고 여기 출

석한 상임위원을 모욕할 권한까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박찬대 지금 국민을 모욕하고 있어요, 김용원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겁박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다 겁박하지 않습니까!

○정진욱 위원 뒷자리로 가세요! 뒷자리로 가시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차라리 퇴장을 시키십시오. 퇴장을 시키시라고요.

○위원장 박찬대 뒷자리로 자리 옮겨 주세요.

○노종면 위원 마이크를 마음대로 쓰시니까 뒷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마이크를 마음대로 쓰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끌어내세요. 끌어내시라고요. 나가라고, 퇴장하라고 하면 기꺼이 퇴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안창호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항상 이렇게 무질서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원장은 상임위원의 상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

안창호 위원장님,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나는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한 적이 없어요.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이 발언하시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모경종 위원 인권위원회 회의가 아주 눈에 뻔하다, 뻔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고함지르지 마세요.

○모경종 위원 저런 사람이 상임위원 하고 있으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얼마나 더하겠어요, 지금?

○고민정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권위원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인권위가 지금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당신 하나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할 기회를 가지는 게 자랑스럽다고요.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뒷자리로 옮겨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옮기지 않겠습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찬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시네요.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들으시지요.

○전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김용원 위원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상 하나 틀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일단 의사진행발언 어떻게, 윤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윤건영 위원 예, 한 1분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지금 한 5년 차인데 저보다 많이 하신 선배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황당하고 기괴한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현안질의에 참석하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분이 나와서 국회에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퇴장시켜 달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를 보는 듯합니다. 우선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권위를 세워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김용원 상임위원을 뒷자리로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대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왜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피의자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당하는지 보여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추가 더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정확하게 보여 주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또 하나 건의드립니다.

상임위원이 지금 이런 정말 몰지각한 행태를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인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제기 삼고 싶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까?

위원장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도 정확하게 지적과 함께 경고를 해 주셔야 되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안창호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운영이 됩니까? 국회에만 나오면 그러는 겁니까, 늘 그렇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잘 아시다시피 한동안.....

○위원장 박찬대 잘 모르는데요.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안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심했다는 말씀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지금보다 심하고 그런 평가는 안 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위원장님, 지금 김용원 상임위원의 발언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말하는 그 태도를 보았을 때 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서로 잘 소통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국가인권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연륜과 그리고 많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게끔 이끌지 못하고 계

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면……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과거보다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안정을 찾은 게 이 정도라면,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참으로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희들에게 올라온 안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가 지난 12월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 안건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현안질의입니다. 이 자리는 실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은 답변을, 형식은 국회의원한테 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국민께 답변하는 것입니다. 국민께 답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께 하는데 안하무인격으로 위원장의 제지도 통제도 받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돌보고 우리 민주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인권위원회가 실제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나름대로, 국회 상임위별로 해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통제를 받아서 국회의원들은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국민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상임위원들은 국민께 답변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고자세로 안하무인격으로 통제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우리 민주주의 질서를 실제 부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이 자리는 국민께 답변하는 자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주의를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위원들이 국민에 대한 답변 태도가, 할 때는 확실히 제지를 하고 해 주시고요.

지금 저 마이크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

○**위원장 박찬대** 앞자리에는 마이크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볼륨을 낮춰 주세요.

○**김병주 위원** 그러면 볼륨으로 통제하든지 그런 통제 방법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하되 위원들의 질의 말고 본인의 주장을 그냥 위원장님 통제 받지 않고 할 때는 볼륨을 낮추어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국민께 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노종면 위원입니다.

김용원 위원의 저런 태도가 원래의 성정에 더해서 본인이 받들어 모시던 내란수괴가 체포까지 당하니까 그 심리적인 불안 상태는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께서 지켜보는 현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하고 있는, 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 운영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본인의 주장을 본인이 발언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막 하는 거지요. 이곳은 답변하려 나온 곳인데 본인이 무슨 연설하고 훈계하고 기자회견 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런 자세를 확실하게 통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마이크 운용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위원장께서 명하셨듯이 위원의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본인은 지금 앞자리는 무슨 권위적인 자리고 뒷자리는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본인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마이크 전부 다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마이크의 그 특성을 활용해서, 악용해서 아무 때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부터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런 취지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마이크로부터 이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에도 저항한다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국회의 의사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라고. 지금 노종면 위원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주의나 경고로 끝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뒤로 안 가면 그러면 대신에 의자를 한 2m 떨어지게 하십시오. 뒤 의자에 못 앉으면……

○위원장 박찬대 지금 강제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지요.

○노종면 위원 마이크를 빼 주시지요. 그리고 휴대용 마이크를 발언할 때마다 주시고요.

○신장식 위원 아니, 답변을 할 때 저쪽에 마이크 있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양쪽으로 가셔서, 발언하실 때는 답변을 요청받으시면 마이크 있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 마이크는 빼고요.

○김병주 위원 저 마이크를 내려 주시고, 저분은 답변할 때는 이동 마이크를 주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마이크를 저 앞에서 빼시고요.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마이크가 있는 자리로 가시면 되지요. 마이크 양쪽에 있으니까요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서서 답변하는 자리 있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사무처, 가능할까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국회는 그런 식으로 권한 남용을 해도 됩니까?

○전용기 위원 마이크 빼 주세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도대체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한 남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신장식 위원 발언권 없이 발언하는 것 제지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발언을 어떻게 제지를 합니까? 퇴장을 시키시라니까요?

○모경종 위원 나가세요, 그러면!

○전용기 위원 퇴장 누구 좋으라고 시키냐고요.

○신장식 위원 발언을 왜 제지를 못 합니까? 국회법 읽고 오세요. 발언 제지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은.

○전용기 위원 누구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맨날 집에 가고 싶어 갖고 퇴장시켜 달라하고.

○위원장 박찬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신장식 위원 위원장은 발언권 제지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남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신장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국회법 다시 잘 읽어 보세요. 위원장님은, 국회 이 회의장 안에서 상임위원장님은 발언을 제지하고, 발언권을 허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은 위원장님만 갖고 계세요. 따라서.....

저것 보세요. 저것 봐. 저 발언을, 허락받지 않고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부터 이격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크 빼 주시고요.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니까 저쪽 마이크 있는 쪽으로 이동하셔서 답변하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법에 따른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보고 법률을 읽어 보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신장식 위원 저기 또 또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신장식 위원님께서 형법상의 내란선동·선전죄 규정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마이크 꺼 주세요.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의견이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 국회법 읽어 보지도 않고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 박찬대 고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저희 이 상임위의 귀한 시간을 토론할 가치가 없는 사람하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만 국회법 166조에 보면 국회 회의 방해죄가 있습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사람의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께서 글쎄요, 제가 횟수 제한을 둘 수는 없지만 일정한 횟수 이상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166조 1항에 따라서 고발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항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고민정 위원님은 지금 166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 이건 적용되지는 않네요.

○**고민정 위원**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찬대** 우리 국회법 166조를 잘 참고해서 김용원 위원의 의사진행, 우리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퇴장을 명하시지요.

○**전용기 위원**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보내 주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찬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저 30초만 의사진행발언……

○**추미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이 상황에 대한 의사진행 하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군요. 국가인권위원회님, 정말 유감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이 지금 국회에 와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본인의 주관적인 법률 의견을 자꾸 피력을 하시는데요. 내란이 좁은 의미로는,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기소가 됐고 관련자들이 내란수괴를 제외하고는 먼저 선행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것 같고요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내란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번의 내란 상태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뻔했던 국가기관의 마비 상태 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야기 상태 이것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채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현안질의로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란수괴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나 헌법을 부정하고 저항하고 있고 밖에서 지지자를 선동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상태가 종식이 됐으므로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하는 지적은 부당하다’라는 주관적 소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내란 상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계속 소란 행위는 지속될 것이고 파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정치권이 이 상태로 지지

자를 선동해 댈 겁니다. 그걸 광의의 내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사실은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로 정치 발언을 계속 하면서 맞서고 있고 소란 행위를 하면서 위원장의 사회 지휘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이 상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떠들지 못하도록.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영상을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는 부당한 명령, 압박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당하고 있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강요된 상태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밖에 없던 사람들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들어라’라는 내란수괴의 지시가 있었고 아마 이분들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 속에 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포고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고령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포고령, 저기 멀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포고령 제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소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체계를 파괴 또는 변혁시키려는 것이며 아울러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공소장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포고령 3항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포고령 4항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한다’,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그리고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안 이것이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상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걸 핑계로 내란수괴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내란수괴의 지지자를 선동하면서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판저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현안으로 올리려고 한 인권위원회가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이 포고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법을 잘 살펴보시더라도 전면적으로 영장주의를 배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12·12 내란 사태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 판례는 ‘전면적으로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판시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는 헌법재판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법리를 잘 째뚫고 계시리라 보는 것이고요. 설령 이 계엄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이번 계엄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공소장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그러한 것 같고요.

만약에 계엄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부 내란·외환죄나 살인·강도죄 같은 경우 일정한 죄목에 한해서……

1분만 더 넣어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넣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일부 죄에 관해서 군사법원 재판권으로 한정하고 있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영장주의를 배제한다든가 전면적으로 계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엄청난 포고령을 두고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성공한 쿠데타라고 우기면서 새로운, 이 헌정질서를 배제한 통치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려고 했을 겁니다. 가장 위기에 빠진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희들도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또는 내란죄가 성립한다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미애 위원 아까 경호처 직원들의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보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조사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직권조사가 여기서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절차를 저희가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주시겠습니까?

○서미화 위원 이따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다음에 하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 요즘에 많은 노고가 있으시지요? 헌법재판관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도 참여하셨지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1조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 인권에 있어서 침해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에 대한 해석보다 인권침해 사유가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고요.

○**강유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헌법 제……

○**강유정 위원** 아니요. 제가 반헌법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지 않느냐라고 대한민국의 인권위원장께 여쭤봤습니다. 이걸 제가 위원장께 답을 못 들으면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헌법 제77조에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반된다면 인권침해라고 지난 12월 11일에 저희가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헌법 제77조는—방금 말씀하신 겁니다—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강유정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헌법 77조를 얘기하셨는데 1조 그리고 언론·출판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3조 그리고 5조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의료인들의 복귀, 이 모든 게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위원** 헌법에 대해서는 반헌법이냐 파면이냐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리지만 제가 다시 참 안타까운, 인권위원장에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느냐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11일 날 8일이나 걸려서, 사실 저는 계엄령 선포한 바로 다음 날 인권위에서 성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려서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느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했는데 막상 인권위가 걱정한 인권은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내란 비호 안건을 제일 먼저 상정하셨습니다. 이것 인권위의 존재를,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면데요.

김종민 위원 자진사퇴했지요. 그렇지요? 김용원 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4인에 대한 사

퇴 요구도 거셉니다. 이분들 거취에 대해서 위원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물을게요.

내란 비호 안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방어권이 아까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의 제일 마지막,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조속히 노력하고 관련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는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인권, 방어권이 가장 시급한 것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 안건이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 상정,
상정이 아니라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의안 절차를 밟아서 다음 주 월
요일 날……

○**강유정 위원** 이것 누가 발의한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원 위원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발의
를 하셨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
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국면에서도 8일이나 걸린 이후에 첫 번째 성명
서 내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옹호하고 인권 피해 사례로 든 사람
이 윤석열 피의자라는 것, 그리고 어제 수색영장 혹시 보셨나요? 뭐라고 돼 있던가요?
수색영장의 죄명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사 하셨으니까 영장의 위엄, 영
장의 무게는……

1분만 더 주십시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나 판
결이 있을 겁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님, 저는 계속 똑같은 질문 했습니다. 인권침해
요소가 없습니까? 포고령 1호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인권위원장에게
물어야지 누구에게 묻냐고 계속 거듭 제가 다시 한번 묻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건 철회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철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여쭤봤습니다. 권한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정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여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 식으로 위원장께서 너무 원칙 뒤에, 법 뒤에 숨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김용원 위원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안건을 올려서 상정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 무기수 김신혜 씨가 최근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고민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위원장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바로 입장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감사합니다.

○**고민정 위원**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는 한데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 처벌을 받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고민정 위원** 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니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고민정 위원** 인권위원이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법적 제재라기보다는, 인권위에서는 법적 제재는 못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권고를……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지요.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김용원 위원이 행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 유린과 탄압의 행위와 말들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법의 구멍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철면피하게 김용원 위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순조로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에서 떨어져 달라는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버립니다. 너무 비열한 행위 아닙니까?

제 생각에 김용원 위원은 극우·수구 세력의 조직원이자 하수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 않지요.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제가 늘어놓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성한 국회에서?

제가 왜 이 말들을 읽었는지 아시지요? 저 옆에 있는 김용원 씨 웃으시더라고요. 저분이 하셨던 말이에요. 철면피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비열하다, 조직원이고 하수인이다, 이 말을 들었을 사람들이 받았을 자괴감, 모멸감 이런 것 없었을까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회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공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것을 공유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판단할 수가 없지요.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하고 누군가가 들었다면 그것을 제지해 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것도 아니고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요 인기 얻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제2의 전광훈을 꿈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속이 엄청 썩으실 거예요. 쓰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안 좋은 소리 들으셔야 되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문제의 안건 내용이 나오자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인권위에 있는 한 직원은 사직서 제출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고민정 위원** 그 직원 만나 면담해 보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통화를 해 봤습니다.

○**고민정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사전에 상의 못 해서 미안하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께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고민정 위원** 아, 그분께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표 제출한 다음에.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 직원에게 뭐라고 말을 해 주셨는가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같이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고민정 위원** 미안하지 않으시던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하튼 제가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과정에서 또 사적인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는 많이 심각하게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기도하면서 미안도 하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어려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좀 짚은……

○**고민정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관련된 문건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원 위원을 인권위가 계속 품고 가는 것 자체가 얼마큼 국제적인 망신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쌓아 오셨던 명예도 같이 먹칠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국회에서도 김용원 위원의 행동에 대해서 참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이 발언하지 말라고 해도 발언을 하고 또 뒤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해도 절대 듣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 회의에서의 그 행동도 위원장님께서 사실 통제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이고요.

어쩌다가 인권국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범이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이 되고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그 내란수괴에 대해서 옹호하는 안건을 올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국회법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참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김용원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혹시 형법 138조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찬대** 제목은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 모욕’이라고 하는 138조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형법상의 규정이 있어요.

국회의 모욕에 대해 가지고 형법 138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한테 써야 되는지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심히 고민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창호 위원장님께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적절한 입장을 꼭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용원 위원은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지만 형법 138조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지금 말씀대로 인권위원장께서도 정돈을 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전용기 위원** 5분 정도는 그렇게 정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한 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모욕 행위가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 반드시 안건으로 올려서 고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김용원 상임위원,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시라고요.

시간 빼 주시고요.

(박찬대 위원장, 박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12월 3일에 알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몇 시쯤 알았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계엄 선포 이후겠지요.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몇 시 정도에.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정확한 시간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알려 줬습니까, TV 보고 알았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마 그 시간에 안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TV 보고 알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뭘 조치하셨습니까? 무엇을 조치했습니까? 그냥 TV만 보고 있

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무런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냥 집에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들어가 주세요.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의 건, 이것 초안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자 다섯 분 있는데 네 분하고는 같이 안 작성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이 대책 권고의 건 내용에 관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게, 회의를 해서 상의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닙니다. 개별적인 통화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전화로 그냥 통보하는 형식으로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통보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뜻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초안은 언제 공개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글쎄, 지금 정확하게 시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 자료 없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병주 위원**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은 비상계엄 언제 아셨나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선포되고서 그날…… 제가 초저녁잠이 좀 많아 가지고서요, 퇴근한 다음에 주위 사람들 몇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이겠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몇 시경에 알았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11시는 넘은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뭘 조치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일단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실인가 하는 생각 하면서, 그때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위원장님은 그냥 잠만 자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TV를 틀면 국회에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계엄군에게, 인권 유린하는 현장들이 계속 비쳐지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날 굉장히 피곤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피곤하다고 국가기관의 장이 잠을 자요, 비상 시국에? 상임위원이라는 사람도 잠만 자고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여하튼 다음 날 저희가 아침 일찍이 우리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몇 시에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날 9시인가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혼들리지 말고 우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자 이런 취지로 회의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국가 비상 시국에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여의도에 와서 계엄군을 막아내고 국회의원들은 체포될 위기를 감수하면서 담장을 넘어서 하고 온 국민이 밤잠설치면서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분이나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나 어떻게 집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 사안을 잘……

○김병주 위원 도대체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누가 줍니까! 그날은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이 여기저기에 있었는데 인권위원회가 뭘 했다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여하튼……

○김병주 위원 슬라이드를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중에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역사 앞에서 관용하는 척하는 자가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죄를 짓음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인권위가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고령 한번 봐 주세요.

포고령 5항 보세요. ‘전공의들 처단한다’, 저것 인권 유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존경하는데 안창호 위원장님은 안창호라는 이름 멱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여하튼 이 포고령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1분 더 주세요.

○김병주 위원 포고령이 몇 시에 발령됐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나중에 들었는데 10시 반인가요?

○김병주 위원 아니, 10시 반은…… 포고령이 몇 시에 발령됐는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병주 위원 몇 시에 발령됐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날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었고……

○이소영 위원 뉴스 안 보셨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못 봤지요.

○김병주 위원 그러면 포고령을 언제 봤습니까? 그다음 날 9시에 봤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희 집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같이 자고……

○**김병주 위원** 아니, 포고령을 언제 봤습니까?

○**강유정 위원** 다음 날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다음 날 봤어요, 9시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그 전에 봤다고, 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병주 위원** 그러면 거기 인권 유린 사항이 그렇게 많이 있고 포고령은 한참 후에 발령이 됐는데 이걸 조치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직무유기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직무유기지요! 인권위원회야말로 직무유기예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김병주 위원** 여기 앉아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김병주 위원**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역사 앞에 저는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김병주 위원** 아니, 국가 비상 위기에 잠만 자고 있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병주 위원** 저래 놓고 뭘 잘했다고 저렇게 큰소리를 치고.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모든 판단을 미루시더라고요. 그랬는데 12월 23일에 인권위에서 대통령의 현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기각을 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기각이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의견이 다수였고 그리고 그날 우리가 무엇을……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은 그 안에서 역할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사회만 보시는 거예요? 역사 앞에서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고하게 계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날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지금 죽 얘기가 나왔지만 직권조사도 하고 의견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인권위에 이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계시다가 ‘아이고, 기각이 됐네. 하지만 기각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는데, 김용원 위원이 했던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리의 건은 또 열심히 논의를 하시네요.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3명의 인권위원이 24년 12월 4일 날 해당 안건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현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해서 사무처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6일, 12월 6일 날 안건 제출 사실을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저는 그 안건을 즉시 다음 전원위원회—12월 9일입니다—의사일정에……

○**김성희 위원** 30초 드렸는데 아직 안 끝나서요. 좀 더 말씀을 요약해서 하는 법을 배워서 다음번에 답변을 나머지 해 주시고요.

김용원 위원이 냈던 안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서 다른 헌법기관들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하고 간섭하는 상황입니다. 상식도 없고 생떼를 쓴, 한마디로 읽어 볼 가치가 없는 한데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죽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이 발의한, 인권위원 등이 발의한 이 안건에 대해서 보면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는 것 같은데, 헌법 10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즉 법률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 맞는 말이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헌법에 있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집행하는 게 법치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슬라이드 내용 보시면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 집행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헌법을 뛰어넘어요. 인권위가 헌법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

그다음은 더 재미있는데요. 권리 주문(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자신들이 말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 시간 제한을 24시간으로 둡니다. ‘위배할 경우에는 결정문에 반대의견이 있음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치도록 미리 의결할 필요가 있다’. 아니, 반대의견을 24시간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인권법에? 참 놀라운 얘기지요. 이런 정도 수준의 의견, 안건 제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게 인권위의 현재 수준이라는 걸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번 PPT 또 보실까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 해도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등 안건 발의한 인권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위에 있는 분들인가 봐요. 헌법재판관 해 보셨잖아요. 헌법재판관이 판단한 걸 인권위가 뒤집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탄핵 결정을 자기가 불쾌하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안건이라는 것을 논의한다는 게…… 제가 말하면서도 부끄럽네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보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재판부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형사소송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될 때까지는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심판절차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인권위가 할 수 있다, 거의 망상에 가까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80일 이내에 해야 되는 선고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이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15회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180일이라는 심판 기간에 구애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다음 것 잠깐 보시면 ‘법관의 독립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불구속 재판까지 외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권위원들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다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어질어질한 것 같고요.

국회 권한인 탄핵소추를 철회하라,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듯 지시하고 있는 게 지금 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는 김용원 인권위원의 안건 내용입니다. 정말 부끄러운데 이것 어떻게 끝까지 읽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이 안건을 제안했던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이제 김종민 위원은 사퇴하셨고 강정혜 위원은 철회를 하셨으니까요. 부끄러운 줄 좀 아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 지식, 양심이 없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회의록에 남음으로써 박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수준 이하의 안건 논의를 앞으로 인권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날 1월 13일 날 저희가 그 전원회의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참석했던 저희 인권위원들 열 분이 20일 날 오후 3시에 회의를 갖자, 그렇게 저희가 이걸 안건으로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으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 내신 성명에 우리 헌법 77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침해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 사후 조치도 해야 되는 게 인권위원회의 기본 소임이에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일어난 행위가 헌법 77조에 위반됐는지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이지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노종면 위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이 있는 게 이 헌법 77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법률도 있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권한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그 제약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이 헌법 77조 3항에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법원의 권한’ 이렇

게 적시돼 있습니다. ‘등’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포고령을 보면 국회 활동, 정당 활동, 지방의회 활동까지도 금지했어요. 이거는 지금 77조 3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계엄 권한의 범위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거 우리 국민이 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될 만큼 복잡한 법리 다툼이 있을 대상인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왜 인권위원장께 여쭤보냐 하면 이 77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그런 것은……

○**노종면 위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계엄 권한 안에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계속되고 있다면 저는 분명 그 즉시 위원장의 성명을 발표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날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판단은 일단 법원과……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민감하지도 않은데 왜 얘기를 못 하실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셔도 돼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포고령 1호에 보면 전체 다 불법이고 위법이고 위헌이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해 놓은 1항과 3항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포고령이 위헌이라면 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그러면 국민의 언론·출판 자유를 통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고개를 끄덕임)

○**노종면 위원**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동의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나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원칙적으로 그 판단은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노종면 위원** 왜냐하면요, 왜 지금 말씀을 하셔야 하나 하면요, 아까 김용원 위원께서는 내란이 끝났다고 하고 지금 계엄이 해제됐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통제를 받았을 우리가 모르는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 부분은 이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지 않

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그런 분들한테, 지금 드러나지 않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잠재 피해자들한테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 그분들이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건데요 저희가 나서서……

○**노종면 위원** 인권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법원에 다 가면 되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법원이……

○**노종면 위원** 왜 비싼 세금으로 급여 드려 가면서까지 인권위를 운영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못 하는……

○**노종면 위원** 법원을 보완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못 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법원의 구제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노종면 위원** 계엄 발표 사실을 알고도 주무셨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몇 시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날 한 8시나 9시쯤 잤을 겁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런데 계엄 선포 사실은 10시 반께부터 언론에 보도됐다는 말이에요, 생중계로. 그때 주무시고 계실 때였다는 말이에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 했는데……

○**노종면 위원** 전화로 들어서 아셨다면서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충상 위원하고도 그날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이충상 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노종면 위원** 몇 시쯤에 통화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밤 12시 거의 다 돼서 통화를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 통화 했을 때, 주무시다가 깨면 더 힘들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그 전에 위원장님이 잠을 드셨다가 깨는지 안 자고 계셨는지 그걸 저는 모릅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12시에는 그러면 잠깐 깨서 들으신 거잖아요, 밤 8시, 9시쯤에 주무시다가, 피곤하셔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노종면 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주무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여하튼 큰 틀에서는……

○**위원장대리 박성준** 1분만 더 주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그날 많이 피곤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계엄 해제 얘기도 듣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다음 날 가는 것이……

○**노종면 위원** 계엄 해제 얘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날 하여튼 듣긴 들었는데요.

○**노종면 위원** 그날은 물론 피곤하셨겠지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노종면 위원** 응급실에 가서도 별떡 일어날 만한 일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여하튼……

○**노종면 위원**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이 새벽 1시쯤에 있었고요. 완전하게 그것을 윤석열 씨가 수용한 게 언제입니까? 새벽 4시 넘어서예요. 그때까지 그러면 안 주무셨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계엄 해제 의결은 제가 봤습니다. 그것까지 본 게……

○**노종면 위원** 의결까지 보고 주무셨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것까지……

○**노종면 위원** 그게 수용되는지 여부는 확인 못 하시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거는 수용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노종면 위원** 사무처에서라도 조치를 요구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그때 누구랑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일단은 다음 날 회의를 갖자, 그 아침에, 그래서 그날 9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계엄 해제 의결이 돼도 해제된 게 아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그렇지만 국회에서 요구하면……

○**노종면 위원** 그냥, 지금 조금 전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 생각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해제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미 의결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법상식으로는 그거는 당연히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어떻게 이런 계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 같았으면 계엄 안 합니다. 저 같았으면 계엄을 안 하는데……

○**노종면 위원** 여하튼 좀 안이한 대처가 매우 유감스럽고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무셨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아셨으니까 사과 좀 하십시오. 국민 법감정 좀, 감정 좀 어루만져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엄 해제되는 국회 의결까지는 보고 그렇게 하고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사과하실 의향 없습니까?

○**노종면 위원**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민들의 눈높이에 그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엄 해제가 저는 국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이고, 참…… 위원장님, 장관급 분이 그게 할 얘기예요, 국민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니까……

○**김병주 위원** 장관급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가비상사태에서 편안히 잠이 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회에서 저는……

○**김병주 위원** 그게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면 사과한다고요? 당연히 건들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국회에서 의결이, 계엄 해제 의결이 되면 당연히 해제돼야 된다고 저는 너무나……

○**김병주 위원** 그러면 왜 대통령한테 전화 안 했어요, 하라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그러면 장관급 분이 겨우 한다는 얘기가 편히 잠을 잔다, 국가비상사태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언제 편히 잤다고 했습니까.

○**김병주 위원** 어느 국민이, 5000만 국민이 누가 이해하겠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언제 편히 잤다고 했습니까.

○**김병주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피곤해서 잤다 했잖아요. 피곤하다고 그때 잠이 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나름대로 저는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이고, 창피한 줄 아세요! 뭘 변명을 하고.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1989년생 모경종입니다.

위원장님, 1980년 5월 18일에 어디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때 서울에 있었지요.

○**모경종 위원** 서울에서 공부 중이셨나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때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있었던 사실을 5월 18일에 아셨습니까, 18일 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그때쯤 알았지 않겠습니까?

○**모경종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5·18 때 사진입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판단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이 계속되면……

○**모경종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질문 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진.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것 잘못됐지요.

○**모경종 위원** 인권 유린되고 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모경종 위원** 누가 봐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상식적인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비상계엄,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를 점령하려 하고 선관위에 가고 군대가 움직였고, 비상계엄이 있으면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89년생 저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경륜도 뛰어나신 인권위원장께서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경종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포고령이 그리고 윤석열의 방송이 있었던 걸 알았다면 누구를 먼저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국민 걱정을 하고……

○**모경종 위원** 당연하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나라가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모경종 위원** 인권위원장으로서 그게 마땅히 하셔야 될 책임이자 사명이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주무셨지만, 주무시다가 확인했지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잤다가……

○**모경종 위원** 예, 확인했지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날 전화도 몇 군데 하고 그런 과정에서 TV를 보고……

○**모경종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 과정에서 해제되는 걸, 국회 의결을 보고……

○**모경종 위원** 아니요, 해제되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계엄이 선포되고 그 상태에서 국민을 걱정하셨다라는 인권위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바로 누구에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지요.

○**모경종 위원** 아니요, 직원들한테 하면 안 되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면 누구한테 합니까?

○**모경종 위원** 계엄을 선포한 사람에게 당신이 계엄을 선포했어도 국민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유린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 전화 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아니요, 대통령에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위원회 명의로 권고안을, 논의 이렇게 잘하시는 것처럼 인권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든 보도자료를 내든 인권위원회 명의로 냈어야 됩니다. 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어렵다면……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경종 위원** 위원장 명의로라도 이러면 안 된다, 인권을 절대 유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역할이지 직원들과 통화 몇 통화 하고 해제됐네 하면서 다시 주무시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상태가 계속됐다고 그러

면 무슨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경종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나 해제가 된 상태에서는……

○모경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해제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정말 긴박하게 해제되는 그사이에 위원장님이 하셨어야 될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제가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인권위에서 과연 그러면 비상계엄이 해제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모경종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해제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지금 외국의 사례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모경종 위원 위원장님은 박근혜 탄핵심판에도 참여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모경종 위원 거기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보충의견으로서 의견을 넣으셨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내란수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바로 못 하시겠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저는 대통령이 권한도 너무, 모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있다 하더라도 권한은 항상 절제되어 행사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절제되어 행사돼야 된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모경종 위원 비상계엄 선포한 게 절제돼서 행사한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데……

○모경종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이 당시 보충의견에 달았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편성·제출권, 광범위한 행정입법권 등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생각 그대로 변함없으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대통령이 잘못하면 자기 권한에 취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그렇게 꼬집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셨고 역사적 선택을 하셨던 분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그 시간이 1분이든 1초든 2시간이든 간에 인권위원장으로서 하셨어야 될,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그런 위헌·위법적인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제가 꾸짖고 어떤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합니까?

○**모경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명의로 보도자료 낸 적 없으세요? 기자회견 하신 적 없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마치 내란이 문제가 없었고 2시간 만에 해결됐고 해제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내가 언제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셔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권고안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뭐라고 적어 놨느냐면, 표현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개 영장판사, ‘일개 영장담당 판사’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거 딱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지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대한민국 삼권분립 국가에서 이걸 다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던 윤석열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 보셨을 테니까, 아모스 5장 24절이 뭔지 기억하시지요? 박근혜 탄핵심판 하실 때 보충의견에 명시까지 하셨지요? 그 성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국민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활약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제가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 12월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이 남규선 위원에게 ‘입 좀 닥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국어사전에 나온 말이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사전에 있다고 어떤 말이든 뱉으면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김용원 위원, 입 좀 닥치세요. 이 말은 오늘 김용원 위원의 막말을 듣고 있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역압받고 차별받는 국민 인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반인권적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하는 김용원 위원의 입은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권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히 짐작을 해 보면서 전 인권위원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현행 인권위법상 상임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으면 면직되지 않습

니다. 저는 김용원 위원의 이런 만행을 보면 볼수록 현행법의 신분 보장과 책임 면제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반인권적인 몰염치한 상임위원이 즉각 파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가 입법 개정안 발의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에 나온 김용원 검사가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동일 인물이지요. 이 외에도 김용원 위원은 한일 어업협상 실패했다고 해수부에 일본도를 보내서 할복을 권유했었던 인물입니다. 가히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답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일 배포된 이 보도자료, 김용원 위원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종이가 정말 아깝습니다. 내란을 용호하는 궁색한 변명을 구구절절이도 써 놓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고액 월급을 받고 있는 인권위원이 작성한 글이라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13일 김용원 상임위원하고 김종민·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전원위에 제출한 윤석열 방어 안건 내용입니다. 계엄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드러난 것이 없고 국회 기물 파손도 짐계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또 보여 주세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계엄 당일 목숨을 걸고 봉쇄를 뚫고 담을 넘은 국회의원과 부상당한 보좌진 이름들이 명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보입니까? 적혀 있습니다.

국회 기물 파손도 없다는 김용원 위원의 이런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용원 위원이 보도 난 것 안 볼 리가 없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작성을 한 겁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용원 위원, 함부로 입 열지 마시고요, 사실 확인하시고 사실 확인한 대로 일하시고.

안건 상정에 동참한 김종민 위원이 이번 일로 인권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서미화 위원** 이번 일로 김종민 위원 사표 낸 것 안창호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내용을 모르고 동의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 사퇴로 그 책임을 겪습니다. 김용원 위원이나 안창호 위원장께서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는지 물고 싶지만 물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로 김종민 위원 사퇴의 원인 제공자는 여기 계신 김용원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작성해서 동의받고 그것을 결재해서 상정하고,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신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또 김용원 상임위원으로서 동료 위원들하고 인권위 직원들,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비상임위원도 이 일로 이렇게 사퇴하시는데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용원 위원, 안창호 위원장 정말 사퇴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서미화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충상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이충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면 곤란한지요?

○**서미화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따르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나오셨을까요?

PPT 보시겠습니다. PPT 보이시지요, 이충상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서미화 위원**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제출하신 분들 사진과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충상 위원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충상 위원님은 동의하지 않는 거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서미화 위원** 동의하지 않으신 거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서미화 위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그 문건은 주문안과 이유 중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서 공동발의를 전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런데 이 안건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재상정되면서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참여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좀 밝혀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권은 반대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기권이나 결석이 몇 표 나오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6명 이상이 해야 되지, 6명 미만이면 부결됩니다.

○**서미화 위원** 이충상 위원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충상 위원께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해 주시면 같이 참여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신가 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제가 퇴직 기념으로 다음 주 일주일간 휴가를 가기로 진작부터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충상 위원님, 한 가지 부탁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면 공동 발의하신 위원들에게 안건 좀 철회할 수 있도록 설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강정혜 위원님께 제가 철회하라고 전화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강정혜 위원님께서 그래서 오늘 철회하셨지요. 철회 의사 밝혔습니다.

김용원 위원을 설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설득하겠습니까, 김용원 위원을? 그런데 이한별 위원은 우리 이충상 위원님이 충분히 법조인으로서, 이한별 위원은 법조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잘 설득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서미화 위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딱 부러지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서미화 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곤란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서미화 위원** 왜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서미화 위원** 곤란하면 안 하겠다, 하겠다 이 말씀…… 그러면 따로 저하고 얘기 좀 하고, 따로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위원님 전화 잘 받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좀 받으십시오.

이게 세 사람 이상이 동의를 해야 상정되는 안건인데 현재 두 분이, 한 분은 사퇴하시고 한 분은 상정을 철회했기 때문에 지금도 세 분이 남아 계세요. 그래서 한 분만 철회를 하시면 이 안건이 철회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인권위가 이런 안건을 상정하는 그 자체가 인권위의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인권위원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충상 위원님이 3월부터는 출근 안 하시고 퇴임하신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본분을 다하는 심정으로 책임감 있게 안건 철회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충상 위원님 들어가 주세요.

안창호 위원장님, 이 안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방어 안건인데 효력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요. 추가질의 혹시 하시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시간 다 됐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답변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계시는 남규선 위원께서 제출한 대통령의 현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과 김용원 위원 등 그때 다섯 분이 제기했던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안에 관련해서 저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의안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상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것을 처리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질의 시작하기 전에 김용원 위원님, 저쪽 마이크 있는 쪽으로, 답변하시려면 마이크 앞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저 뒤통수 보이는 분이 김용원 위원 맞지요, 저 동영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장식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이 당시 3시부터 전원위원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저와 고민정 위원, 서미화 위원이 혹시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생길까 봄 방청 신청을 해서 방청 권한을 가지고 3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고민정 위원, 서미화 위원이 한 층 아래에 있는 안창호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게 1월 13일 오후 4시경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만나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앞길을 막으셨지요? 그래서 제가 ‘길 막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막은 것이 아니고 비켜 드리지 않은 겁니다.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답변하라고 제가 여쭈 것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자꾸 일방적으로 사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신장식 위원 ‘길 막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김용원 위원님,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신장식 위원 ‘길 막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은 고민정 위원도 들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저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4시경 조금 지나서 안창호 위원장님 뵠러 가서……

안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신장식 위원 그때 저희들이랑 이런저런 말씀 나누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신장식 위원 바로 한 층 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김용원 위원님을 지나서 위원장님 만나러 가기까지 이렇게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저는 침해됐다고 보여요, 저의. 그렇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거주·이전의 자유까지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권위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더군다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갔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안창호 위원장님, 이런 일이 또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신장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 문서를 보면요, 문서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있잖아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의 건,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김용원 위원이 적었다고, 쓰셨다고 얘기한 것 11쪽에 보면 ‘경제관료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면 12쪽에 ‘일개 영장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다음에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법관들이 함부로 내란죄 성립을 예단하고 마구잡이식 영장 발부에 나섰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부화뇌동한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14쪽 아래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이는 법리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소로운 주장이다’.

안창호 위원장님, 법률가로서 소위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이런 기관과 개인을 낚잡아 보고 혐오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읽은 것은 기관과 개인을 혐오하고 낚잡아 보는 표현이 맞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신장식 위원** 안타까우시지요, 혐오하고 낚잡아 보니까?

이런 문서예요. 이런 문서가 전원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가 여쭙지 않을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문서를, 아까 김성희 위원께서도 보여 주시고 하셨는데 쭉 보면 오만과 편견, 반인권적 혐오가 가득한 문서고요. 법률용어를 동원해서 주관적 사실판단에 근거한 케변으로 점철된 문서라고 보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논증 제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관련 대법원 판례나 현재 결정 왜곡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그런 게 너무 가득해서 일일이 다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현재 결정사항을 왜곡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오류도 무릅썼어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독단적으로 전제하면서 탄핵소추 피소주자이자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진력해야 할 인권위가……

저 한 1분 반 정도만 더 넣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사실도 아니고 인권 보장 기관이 취할 적절한 논리도 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인권 관련성이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상정할 안건은 인권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권 관련성에 대해서 뭐라고 써 놨냐면 그냥 ‘대단히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건 상정이 돼도 되는 겁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준이에요, 이 글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PPT 한번 보시지요. 마지막 장 보세요.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전원위원회에 위원들이 직접 상정한 안건들이 어떻게 다뤄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9건

있었고요.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만 8건이 있었는데요. 안건 제출일로부터 짧으면 12일, 길면 378일이 걸려서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니까 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께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지연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12일, 48일, 378일, 38일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셨어요. 그냥 고무도장이 아니시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장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건이 제출됐으니까 전원위원회에 올린다, 저는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원회께서 그렇게 그냥 형식, 절차 다루듯이 할 게 아니라 설득하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와 위상을 생각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숙려하고 소통해서 철회할 게 있으면 철회를 하도록 정무적 역할을 하시는 것 또한 위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관련해서 직권조사를 해라, 그리고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해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편향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동일한 절차를 거치시면 안 돼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리고 23년 이후로 6건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권으로, 긴급 안건으로 제출이 돼서 이런 안건들은 대부분 일주일 내로 곧바로 상정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좀 넘은 것도 있네요. 이와 같이 곧바로 대부분 상정이 됐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신장식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바로 잡겠습니다.

그건 직권조사나 긴급 안건이 아니라 위원들이,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23년 4월 13일 이후로 6건이 제출이 되고 그런 것들은 거의 곧바로 의안이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몰라도 최근에는 이렇게 운영됐음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우리……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사실을 달리 말씀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아니, 우리 지금 뽑은 겁니다, 여기.

○**위원장대리 박성준**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어요?

○**신장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뒤를 돌아보며)

이것 맞는 거지요?

○**신장식 위원** 23년 4월 13일……

○**위원장대리 박성준** 잠깐만요.

신장식 위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사실관계만.

○**신장식 위원** 23년 4월 13일 날 제출된—석원정, 김수정, 서미화, 윤선희, 네 분이 제출한 거예요—이것 안건 상정 4월 24일 날 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니까 열흘 정도……

○**신장식 위원** 12일 소요됐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열흘 정도.

○**신장식 위원** 그다음에 북한인권법 시행 7년에 즈음한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권고, 8월 9일 발의돼서 9월 25일, 48일 소요됐어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아니, 8월 28일 날 상정됐습니다.

○**신장식 위원** 9월 25일 날 의결됐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8월 28일입니다. 우리가 확인……

○**신장식 위원** 9월 25일에 의결된 걸로 저는 인권위원회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니까 그것은 의결 날짜가 그렇다고 합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의결까지 그렇게 걸리셨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니까요. 상정은 곧바로 된 겁니다, 28일.

○**신장식 위원**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378일 소요됐지요. 그건 맞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은 의결이랑 다른 거지요, 상정이랑은.

○**신장식 위원** 의결과 상정은…… 저는 의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건 저는 상정을 했기 때문에……

○**신장식 위원**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8일 걸렸어요, 11월 15일 날. 맞지요, 의결까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장대리 박성준** 마무리해 주시고요. 혹시 추가……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규선 위원이 제기한 것도 그것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신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적으로 그냥 상정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상정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장식 위원** 숙려와 조정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 명칭을 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위원장대리 박성준** 위원장님도 마무리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권위원장은 상정은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 신장식 위원님께서 본인과 고민정 위원의 길을 막았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동자 유권을 박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길을 막은 것이 아니고 길을 비켜 드리지 않은 겁니다. 나는 왜 길을 이렇게 비켜 드려야 되냐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가로막혀 있었던 것은 전원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것인데 인권위원회 직원들하고 인권단체 한다는 사람들하고 저의 입장을 저지한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박탈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엄연하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피해를 당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마무리해 주세요.

김용원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단체의 직원, 인권단체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건……

○**위원장대리 박성준** 김용원 위원님,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국가공무원인 인권위 직원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신가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김용원 위원님, 충분히 들으셨어요. 들어가세요.

○**노종면 위원** 가서 따지세요, 그 사람들한테. 왜 다른 사람을 막아요, 그렇다고?

○**신장식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 길을 막은 것과 비키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성준** 알겠습니다. 충분히……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왜 비켜 드려야 됩니까?

○**노종면 위원** 궤변의 연속이야, 궤변의 연속. 아주 궤변의 끝판왕을 봅니다, 그냥 끝판왕을. 그냥 유튜브나 하세요, 극우 유튜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말씀 삼가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말씀은 김용원 위원이 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말씀하시지요.

○**윤건영 위원** 지금 상황 참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어폐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우리 정국도 안타깝고 이 자리도 안타깝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윤건영 위원** 인권위가 국민께 보여 주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를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인사청문회 때 제가 했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법관으로 평생을 계셨고 나름 생각하시는 게 보수적일 수는 있겠지만 인권위만큼은 대한민국 인권의 보루로 제대로 원칙적으로 잘 지켜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이 상임위장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이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인권위가 일부 인사들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럴 때는 위원장님께서 원칙과 절차만을 따지실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하실 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위원장님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고 인권위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위원장께서는 ‘아니다. 절차와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 와서 벌어진 지금의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지금 1년 안 되고 넉 달 됐습니다. 넉 달 좀 넘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넉 달 동안 바뀐 게 없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도 우리가 안전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이런 안전은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이것도……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국민들이 지금 보시기에 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로 밟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요. 이건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태도의 문제예요.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원칙을 거론하면서 봄주기로 일관하시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비상계엄 상황 이것 자체가 정상적입니까? 국회에 총을 들고 군인이 와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게 합법적이고 우리 헌법에 맞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법……

○**윤건영 위원** 아니, 헌법재판관이셨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법이나 위헌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왜 적절치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다른 국가기관이 판단하도록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국무총리도 인정하고 장관도 인정하고 다른 기관도 다 인정했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분들은……

○**윤건영 위원**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번 비상계엄은 적절치 않았다. 헌법에 위반된다.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권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같았으면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은……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같았으면 당연히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인권위 내의 상임위원이라는 자가 그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선전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게 인권위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여하튼 저는 법과 우리 규칙을 따라서 이런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합니다.

○**윤건영 위원** 법과 원칙을 어긴 비상계엄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게 위원장님이세요. 평생을 헌법을 보시고 법률을 보신 것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윤건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못 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런 절차도, 우리가 해결하는 절차도…… 물론 그것의 잘잘못은 법원이나 현재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저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 위원**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할 겁니다. 헌법재판관 하셨잖아요. 그건 현재 뜻이에요. 다만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냐,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불법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고 그런 불법적인, 위헌적인 행태를 감싸고 방어하고 선전 선동하는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준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제발, 유념하실 게 아니라 인권위를 제대로 세워야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여하튼 인권위가 하도록, 여하튼 안전으로 올라온 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법과 원칙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인권위 내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정능력을 갖추는 게 위원장님의 역할이고 뭔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권위원은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 인권위가 되는데 그게 정말 얼토당토않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겁니다, 정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위가 전원위뿐만 아니라 상임위가 몇 달씩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안건 처리 같은 것도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과 법 그리고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 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 내란이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하고 이제 현재에서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르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헌법재판관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윤종군 위원** 본인도 그때 동의를 하신 거지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윤종군 위원** 추가적인 의견도 내셨던데, 그때 사건하고 이번 사건하고 뭐가 더 심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여하튼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윤종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더 심각해요, 생각하시기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염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니까 뭐가 더 심각해요, 박근혜 사건하고 이번 사건하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여하튼 제가 이런 부분을 이미 그때 당시에……

○**윤종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뭐가 더 심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것이……

○**윤종군 위원** 뭐가 더 심각한지 구분을 못 하시겠으면 그냥 못 하겠다고 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판단도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윤종군 위원** 그러니까 개인 안창호로서 뭐가 더 심각하다고 보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더 심각하다고 보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예?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현재 판단을 앞두고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뭐가 더 심각한지도 얘기하지 않겠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그렇지요.

○**윤종군 위원** 뭐가 더 심각한지 그러면 생각이 없으신 거네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많이 있지만 말은……

○**윤종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이 참여하셨던 박근혜 탄핵 때 탄핵 결정문에 있는 겁니다. ‘최순실 등 사인 간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고 이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 기억나시지요? 이번에 윤석열은 사인인 명태균, 김건희의 총선 개입,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이런 것들이 이미 녹취록으로 다 나왔어요. 뭐가 더 심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종군 위원** 아니,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증거……

○**윤종군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증거채부를……

○**윤종군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할 것 아닙니까?

○**윤종군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러면 왜 질문하십니까?

○**윤종군 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군 위원** 제가 정황증거를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참여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때의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권한남용, 뭐가 더 심각하냐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채부라든지, 증거채부 절차를……

○**윤종군 위원** 그러니까 뭐가 더 심각한지 답변하지 않겠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헌법재판소에서 그 절차를……

○**윤종군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군 위원** 그만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래서……

○**윤종군 위원** 그만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헌법재판소의 그런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데……

○**윤종군 위원** 마이크 좀 꺼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위원장님!

○**윤종군 위원** 좀 물을 때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위원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또 드리면 이게 질의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질의에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지금 모든 위원들의 질의에 같

은 말씀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종군 위원이 듣고 싶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황이 뭐가 더 심각하냐 그것만 물을 테니까 생각이 없으면 없다, 판단 못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건 아니지요. 나도 생각도 있고 판단도 있어요.

○윤종군 위원 가만히 좀 계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데 왜 그 두 가지만 답을 하라고 합니까?

○윤종군 위원 아니, 지금은 저한테 주어진 질의시간 아닙니까. 제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래도 ‘오, 엑스’로만 대답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답을 해야지 제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요.

○윤종군 위원 시간 좀 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추후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박근혜 판결문에는 ‘국회와 언론의 지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은 수차례 입장문을 통해서 거짓말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가 이미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일관되게 진술이 확인돼요. 그리고 심지어 김용현과도 서로 지금 말이 틀리고 있어요. 지속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한 게 박근혜 때가 더 심각합니까, 이번 사건에서 더 심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종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답변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증거는……

○윤종군 위원 그만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증거채부 절차를 거쳐서……

○윤종군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정이 돼야 될 겁니다.

○윤종군 위원 그만하시라고요! 참, 정말……

○노종면 위원 논거는 안 해 주셔도 다 알아요, 그냥.

○윤종군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도 된다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지요. 현재에서 결정할 거를 내가 왜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까?

○윤종군 위원 현재에서 결정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박근혜 때보다,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심각하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것은 지금 사실인정을 현재에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증거도 지금 보지도 못한 상태예요.

○윤종군 위원 그걸 꼭 본인이 봐야 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말을 할 때는……

○김병주 위원 증거를 못 봤어요, TV에 맨날 나왔는데?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말을 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면 정확한 걸로 하나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써 있지요? 이번에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서류 송달도 즉시 했어요.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하루 뒤에 받았고. 그런데 이번에 아예 받지 않았지요? 객관적인 팩트로 언론에서 보셨지요, 서류 송달 안 받은 것? 못 보셨어요? 몰라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그게 없습니다.

○윤종군 위원 압수수색 거부한 건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체포영장 거부한 건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마지막에 어떻게 됐지요, 마지막 집행은?

○윤종군 위원 1차 체포영장은 거부했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건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놓고 볼 때 박근혜 때가 더 심각합니까, 지금의 법 위반이 더 심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윤종군 위원 그것도 말 못 하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석준 사무총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대리 박성준 1분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92년도에 공직에 오셔 가지고 2002년부터 인권위 23년 차세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윤종군 위원 인권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 진보·보수 정권을 다 겪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인권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제가 사무처 설립 이후부터 계속 같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위원회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종군 위원 예전 인권위보다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용원 상임위원같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인권위 회의할 때도 이렇게 했던 적이 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다 상황의 맥락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종군 위원**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김용원 상임위원같이 이렇게 인권위 회의에서 과행을 일으키고 국회에 와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고 이런 위원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기존에 이렇게까지 어떤 상황이 진전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종군 위원** 죄악의 인사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윤종군 위원** 죄악의 인사다, 그동안 인권위에 있었던 인사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아니요.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종군 위원** 본인은 그렇게 말씀 못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권위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실 건지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저희 사무처는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싶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인권위를 보면서 든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인권위는 극단주의자에게 휘둘리는 바보 허수아비 기관 같아 보입니다.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런 심정이 들고요.

인권위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원칙적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소영 위원** 권력자를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권력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됐을 때 그런 것을……

○**이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권법이나 인권조약이 힘 있고 인기 있는 자를 위해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아시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아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아는 사례도 없습니다.

인권위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뉴스만 검색해 보셔도 불과 며칠 전에 경기도 양주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4명 또 얼마 전에는 창원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3명,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끊었고요. 불법 촬영물로 인격이 말살되는 여성들, 20년째 몸에 쇠사슬 묶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 학대와 가혹행위 호소하는 보호시설 청소년들, 인권위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인권 문제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

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선다, 저는 이런 사례를 국내는 물론이고 동서고금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고 하는 권고안 이 내용 읽어 보고 결재하신 거지요, 상정을?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이소영 위원** 권고안의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하라.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하라. 탄핵심판절차 정지 검토하고 180일 얹매이지 말고 천천히 심판하라. 체포·구속 영장 청구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석 허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라. 불구속 수사하고 영장 청구 남발하지 마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권고안 내용은 누구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것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용 거기에는 피고인의 인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으니까 피의자겠네요. 피의자가……

○**이소영 위원** 윤석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리고 우리 헌법적으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다 인권의 보호대상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인권위가 지금까지 약자들을 위해서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1급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구치소에 계속 구금하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 유지 조차 어렵다라고 해서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고 경찰이 그 권고를 수용한 적이 있고요. 2014년에도 고교 특수학급 재학 중인 지적장애인 학생에 대해서 미성년자 조사할 때 옥설하고 폭행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경찰이 그 권고를 받아들여 시정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이나 소수자와 같은 약자에 대한 수사 말고 대통령이나 장관급 공무원에 대한 수사·징계 절차에서 인권위가 이번과 같은 유의 권고를 낸 적은 없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볼 때도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면요, 외국에도 왜 이런 사례를 우리가 들어 본 적이 없냐면 우리가 흔히 인권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등함을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약자들이 동등해지기 위해서 그 동등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인 권력과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또는 저명인사가 나도 일반 시민이나 약자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호해 달라, 인권위가 나서서 이 권리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은 인권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오히려 권리 독점하는 태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자에게는 관대하게, 강자에게는 엄정하게’ 이게 법의 정신이고 인권의 정신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촉구하는 이 권고안도 ‘약자에게는 관대하게, 강자에게는 엄정하게’ 이 정신이 반영된 것인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앞으로 그것은 우리 인권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나갈 겁니다.

○**이소영 위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위원장님, 제발 본인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권침해를 판단할 수 없다면 인권위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많은 일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인권위는 왜 존재하냐고요. 그거 다 재판 나오고 나면 하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이건 그거랑 다른 거지요.

○**전용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다른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용기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권고안도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올 건데 왜 권고안을 상정하려고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을 하면, 물론 3인이나 2인이나 그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해야 됩니다.

○**전용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개별 판단은 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 보니까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단한다, 의사들 처단한다고 이게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언제 아니다라고 했나요?

○**전용기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 인권침해 맞지요, 처단한다? 포고령.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게 실행됐으면 당연히 그것은 인권침해……

○**전용기 위원** 포고령이 실행이 안 됐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 부분은 실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처단하는 것은?

○**전용기 위원** 아, 이 부분만 실행이 안 됐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다른 부분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전용기 위원** 굉장히 많이 침해됐지요. 기본적으로 포고령 위반했다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주민 의원,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고발까지 했어요,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치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유효했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출신의 인권위원장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는 지키셔도 됩니다.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뭐 눈치 보는 그건 아닙니다. 제 소신입니다, 이것은.

○**전용기 위원** 그렇게 눈치를 본다고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다른 국가기관이 하고 있는 일을……

○**전용기 위원** 이 안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이것을 할 때 직원들이 뭐 별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전용기 위원** 별다른 얘기 없었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남규선 위원님이 제기한 안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이걸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랬다면……

○**전용기 위원**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전용기 위원** 운영규칙 6조에 보면 제출한 의안을 간사가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합니다.

간사가 누구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어떤 간사요?

○**전용기 위원** 아니, 운영규칙 6조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원래는 운지과에서 전체적인 안건과 간사는……

○**전용기 위원** 간사가 누구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운지과장이 간사일 겁니다.

○**전용기 위원** 지금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용기 위원** 해당 안 검토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이번에 제출된 것 말씀이시지요?

○**전용기 위원** 예.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내용에 대한 걸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의안번호를 받아서……

○**전용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규칙 6조에 따르면 제출한 의안을 간사가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의안번호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토하셨느냐고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운지과에서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용기 위원** 내용 검토 안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예.

○**전용기 위원** 위원장님, 운영규칙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인권위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이렇게 검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용기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거 검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의안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운영지원과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전용기 위원 이렇게 운영해도 돼요?

답변해 보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용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저희는 안건이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거치고.....

○전용기 위원 어떤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아니, 간사가 검토하게 돼 있다고 운영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간사가 과장님 아니세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예, 제가.....

○전용기 위원 그런데 검토를 못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다 거치고 온 거라고 판단하고 따로 별도로 하지.....

○전용기 위원 그래서 의안번호만 했어요?

위원장님, 최소한의 운영규칙도 안 지키는데 무슨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권위원회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이렇게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기 위원 아니, 이것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고 확증편향을 가지고 작성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데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전부 다 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는 한 이것은 전원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운영이 똑바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운영규칙에 형식적인 요건이 돼 있으면 간사가 검토하게 돼 있는 이 규칙도 무력화됩니까?

규칙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기 위원 이게 인권위의 실태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운영규칙도 숙지가 안 돼 있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2023년부터는, 최근 2년 동안에 인권 위원 의안 제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식적 절차를 갖추면 그 안건은 원칙적으로 다 상정을 했습니다.

○**전용기 위원** 이 권고안이 얼마나 졸속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인권위에서 통과가 되고 강행처리하려고 했는지 지금 이 내용만 봐도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저희가 강행처리하려고 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검토도 안 됐고 그게 바로 상정이 되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상정 여부는, 상정이 된 다음에는 우리 인권위원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수정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고 전원위원회 때도 그렇고요. 그것은 지금 인권위원회의 운영을 너무 외피적으로만 판단하시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용기 위원** 아니, 규칙도 제대로 하나 안 지키면서 무슨 일을 또 하겠다고 하면서, 원래 그렇게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원래 그것은 형식적 요건밖에 사실 사무국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기 위원** 아, 보완이 필요한 것도 형식적 요건이어서 필요없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지요. 형식적 요건 보완이지요.

○**전용기 위원** 일단 간사님, 검토 안 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형식적 요건이 맞으니까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용기 위원** 잠깐만요.

간사님, 검토 안 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예, 내용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요건이 갖춰져 있나만 봤습니다.

○**전용기 위원** 내용 검토 안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사무처에서는 상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윤종근 위원** 알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검토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윤종근 위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알았습니다.

○**윤종근 위원** 똑같은 말만 어떻게 저렇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국민들의 오해가 없지요. 자꾸 잘못하면 인권위가 막 너무 엉망으로 운영되는 것같이 오해를 줄까봐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저도 제 질의시간이라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하시면서 박근혜 탄핵심판 할 때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성경 문구를 많이 인용하셨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장대리 박성준 제가 하나 좀 궁금한데 독일에서…… 보수당이 없어요, 독일에는요. 그러면서 기독교민주연합?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기민당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기민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당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장대리 박성준 왜 보수당은 없고 독일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민주당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여하튼 독일에서는 기민당을 보수당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보수당으로 분류하는데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왜 기독교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것은 우파, 극우파가 득세하면서, 나치즘이 득세하면서 인권유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중도우파라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기본권, 인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주주의와 연합해서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의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극우파에 의한 선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 직시를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장대리 박성준 독일에서 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까?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렇지요? 왜 독일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나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나치 독일의 그런 쓰라린 경험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렇지요. 나치 정권의 인권유린이 있고, 나치가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잘 아시지만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원래 의회 입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입법권의 전권 위임을 행정권이 받는 거예요. 행정권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절차적 법을 다 완성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권유린을 하고, 독일의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 이런 절차에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 인권의 최종 목표를, 인권유린을 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하셨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장대리 박성준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입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인 거예요. 이 수권법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 하셨던 위원장이 왜 그것을 부인하시는지 제가 죽 질의를 들으면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 부인 안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대리 박성준 제가 또 하나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만들었어요? 이런 비상계엄과 국가권력의 인권침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예측을 하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당했습니까? 박정희의 비상조치, 유신정권하에서 야당의 정적 죽이기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비상계엄은 야당의 정적 죽이기를 통해서 영구 집권, 독재 정권, 장기 집권을 모색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체포조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체포조를 명령하잖아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국회의장 체포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장기 집권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두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승만도 1952년도에 비상계엄을 발췌개헌하면서 왜 합니까? 장기 집권하려는 거예요. 야당 정치인들 다 감금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상계엄의 기본적 특성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냐면 파시즘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치즘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군사정권의 가장 기본적 모태가 뭐냐면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그대로 따라 한 게 히틀러의 나치즘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3세계 국가들의 군사정권이 이 모델을 따라간 것이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전두환도 이 모델을 따라간 겁니다.

이 모델을 다시 전 세계 10대 강국인 우리나라에 또 다른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었던 말이에요. 이게 비상계엄의 실체인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의 헌법재판소, 독일의 기민당, 우리나라의 지금 인권위원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전 세계의 역사를 죽 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인권위원장인 위원장님께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지만 인권위원장으로서 이 헌법적 가치, 헌법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상계엄은,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댄 것 아닙니까? 인권을 짓밟은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가치, 헌법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국가 인권을,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인권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도 하셨고 국가 인권위원장도 하셨고 과거에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했던 분이 이 얘기를 못 한다,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위원장대리 박성준 헌법의 최종 판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

면 인권위원장은 어떤 철학과 어떤 생각과 국가철학이 있는 것인가,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라는 것은 저는 참……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답변을 할 수 있지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는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 여기에는 단순한 자구적인 헌법이 아니라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구현되는 그런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 또 인권이 존중되고 최대한 발휘돼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확고부동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다 하는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위원장님, 저는 인권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최종 인권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와서 저도 아쉽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인데 혹시 화장실 꼭 가셔야 되나요, 지금? 몇 분 안 남아서 3분씩 하면 한 20분 안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냥 지속적으로 해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5분 하고 쉬시고 추가질의를 계속하시지요. 보충질의 여러 개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7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 7시 5분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7시 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씩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이 일곱 분인데 일곱 분 끝나면 바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욱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권고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수많은 비판 속에 있고 또 인권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그런 권고안인데 결국 저는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충상 위원님께서 강정혜 위원님을 설득해서 철회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다른 분들, 김용원 위원님이라든가 이한별 위원님, 한석훈 위원님 계시는데 발의자인 김용원 위원님이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다른 두 분을 이충상 위원님과 함께 좀 뵙고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인권위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위원장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정안에 결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권고안이 올라오도록 만드셨고 또 20일에는 다시 올라오게 되고 아마 그걸 또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일이 인권위 안에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과감하게 그 결재를 하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 만시지탄입니다마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후의 인권위 운영에서도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제가 하겠지만,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인권위가 정상화되지 않았다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안건 처리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모든 문제도 저희가 정말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막 불편부당하게 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그런 운영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규선 위원님이 제출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절차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동일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정상적 안건이 올라와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 권고안은 내란을 옹호하고 또 그걸 긍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까지도 하는, 어떻게 보면 내용상 월권이라든가 도저히 관여하지 않아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까지도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고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비정상적 권고안에 대해서, 비정상적 안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더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안창호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아직은 없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현재와 사법부 판단이 있고 나서도 의견을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월권이 될 수도 있고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지금 말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차원인데, 위원장님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걸……

○**강유정 위원** 아니요. 편하게 들으시고, 제 질문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질문하셔서 그랬는데요.

○**강유정 위원** 지금 내란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질문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강유정 위원**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 확인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강유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1심 판결에 대해서 판결로서 일단 존중은 합니다. 그것이 상급심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상급심의 판결을 존중을 하고요.

○**강유정 위원** 상급심까지 또 기다려야 하시는 건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강유정 위원** 일단 1심 판결 나왔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정훈 대령의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면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박정훈 대령이 그 어마어마한 외압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1심 판결 난 이후에 여쭤보는 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여하튼……

○**강유정 위원** 대답을 한꺼번에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소위에서 두 차례나 부결시켰습니다. 인권 최후 보루 기관이라는 인권위원회인데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신청을 소위에서 두 차례나 기각시켰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강유정 위원** 물론 위원장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기관의 대표로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고민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인권위인데 인권위에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그러니까 윤석열은 현재 심리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초 가능성도 높고 체포영장 발급되었고 구속영장 신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안건이 만들어졌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진행 중인데 안건 상정이 돼서 긴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외압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해당 안건을 두 번이나 인권위에 요청했는데……

지금 1심 판결이 났는데도 사과 못 하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안전화하셨으면서 1심 판결이……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지금 안건이랑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어떻게 다른 의미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 의견을 내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사과하실 의향이 없다는 걸로,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면 그에 대해서……

○**강유정 위원** 확정 판결이 나야만 인권위 입장이 나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것은 이미 소위나 이런 데서 결정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확정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강유정 위원** 그러면 인권위는 판결 난 이후에 판결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는 기관이라면……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 처음에 위원회에서……

○**강유정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왜 지금 모든 것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시급하게 1월 13일 날 긴급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의 건이 논의되고 왜 박정훈 대령은 1심 판결이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못 받는지……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가만히 말씀 좀 들어 봐 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강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잠깐 나와서 서 주시지요.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그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성준** 1분 더 드리십시오.

○**강유정 위원** 짧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그리고 상관의 명예훼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확인하셨지요? 확인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판결문을 읽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과할 의향 없다고 하셨는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의 건, 이거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냐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유정 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누가 썼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첫 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거 왜 거짓말 쓰셨어요?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있는지와 다친 정도에 대하여는 드러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박찬대 위원장께서도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거든요. 왜 거짓말 써서 이렇게 권고의 건 쓰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거짓말을 쓴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가진……

○**강유정 위원** 왜냐하면 탄핵안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탄핵소추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고 그때 당시에 기사도 많습니다. 국회사무처가 파악한 인적 피해 사례는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등 10여 명이 부상했고 6600만 원 규모의 재산 손괴도 있다라고 기사도 나와 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거 막 쓰세요, 거짓말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글쎄요, 그런 것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사람이 열 사람 넘게 다쳤는데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고 하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진단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기사가 실렸고, 탄핵소추안에 실렸는데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위원장대리 박성준** 알지 못하면 쓰면 안 되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강유정 위원** 사퇴하십시오! 사과하지 않을 거면 사퇴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 기각 결정은……

○**강유정 위원** 들어가십시오. 인권위 위원으로 자격 없습니다.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비상임위원도 기각에 찬성한 사안입니다.

○**강유정 위원** 마이크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미화 위원** 들어가라고 해 주세요.

○**강유정 위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강유정 위원** 거짓말하셨습니다, 피해 사례가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성준**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전용기 위원** 들어오세요.

○**서미화 위원** 거짓말한 것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무슨 말씀이세요?

○**전용기 위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신장식 위원** 그러면 쓰지를 말았어야지.

○**위원장대리 박성준** 들어가십시오, 김용원 위원님.

○**전용기 위원** 질문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제가 위원장대리로서 한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위원장대리 박성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이지요, 공권력,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인권침탈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을 행

사하는, 합법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보장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납득할 수 있느냐? 그것도 비상계엄, 내란까지 했던 내란수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성찰을 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박정훈 대령, 국가권력기관에 의해서 인권침탈된 것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었는데도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은 연락 받고 잠을 잤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너무나 충격적인데,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김 위원님, 그것 사실 왜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했지만……

○**김병주 위원** 아니, 질의할 테니까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일단.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자다가 깨고 그다음에 계엄해제 때까지는 눈 뜨고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병주 위원** 계엄해제가 몇 시에 됐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때가 1시 몇 분인가 저……

○**김병주 위원** 계엄해제는 04시 30분경이에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 해제가 아니라 국회 의결 말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국회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잤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지요.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그날 해제가 새벽에 됐는데 6시간 동안 그러면 국가인권위는 한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6시간 동안?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러면 9시에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지 논의를 하자……

○**김병주 위원** 아니,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했냐고요. 비상계엄……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같이, 우리 직원들 몇 명하고 통화를 하면서 다음 날 9시에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곧바로.

○**김병주 위원** 그러면 9시에 회의하자는 결정만 했다,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지요. 그 해제되는 것 보고 저희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병주 위원** 그러면 12월 4일 날 출근은 몇 시에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12월 4일이 뭐지요?

○**김병주 위원** 비상계엄 다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날 9시인가 그때……

○**김병주 위원** 정상 출근했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정상 출근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참, 아휴……

그려고 나서 사후에, 그 이후에 지금 인권유린 사항이 많은데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유린 사항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조사에 대해서는 군인권위원회에서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김병주 위원** 지금 군인권보호관이 누구인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검찰 또 경찰 또 공수처 이런 등등에서……

○**김병주 위원** 잠깐만 스톱하시고,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앞서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까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빨리 질의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군인권보호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김용원 위원께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비상계엄이 되고 난 이후에, 됐을 때부터 해서 군부대의 인권조사 실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가장 빨리 계엄선포로 인한, 계엄선포에 관한 군인권보호위원회 차원의 직권조사 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김병주 위원** 몇 시에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군인권보호국에서 지금 관련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언제 했어요, 그 지시를?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김병주 위원** 그러면 언제 확인하라고 권고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글쎄요, 그 날짜가 언제였는지 우리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12월 9일인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12월 9일.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은 어느 지역이 발령됐습니까? 서울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이 발령됐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비상계엄은 전국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전국 일원이기 때문에 전군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김병주 위원** 들어가세요.

인권위원장님, 지금 인권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국가공무원인가요, 지방공무원인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공무원은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공무원이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김병주 위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8조 아시나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김병주 위원** 뭐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러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을 때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상근무 발령 안 했지요,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마……

○**김병주 위원** 그다음……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김병주 위원** 인권위법 1조가 뭐지요? 1조가 뭐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민 인권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김병주 위원** 인권 보호와 민주적 질서 회복이잖아요, 인권·기본질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김병주 위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적 질서가 파괴됐는데도 인권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을 모두가 한 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국가인권위법 1조(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법을 위배한 거예요, 비상근무도 안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은 진짜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 보세요, 전부 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병주 위원** 일어나 보세요, 전부 다! 국민께 정중히 사과 한번 하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일어나서 정중히 국민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비상계엄이……

○**김병주 위원** 여러분들의 태도, 장관급……

1분만 더 주세요, 이것은.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김병주 위원** 장관급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연봉이 1억 넘지요?

차관급 상임위원님들 업무 태도가 국가위기 앞에서 연락받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의만 하자고……

이때가 평상시인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조치

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국민이 지금, 아까 인권위원장 잠자고 있다 하니까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김병주 위원** 정중히 사과하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러운 질문은, 대법원 판결도 그런 것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표도……

○**김병주 위원** 사과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갑작스런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의……

○**김병주 위원** 저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묻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과거의 그 기억이 갑자기……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지, 제가 완전히 잠잤다고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그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을……

○**김병주 위원** 지금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현안질의를 받으려 왔는데 그런 것도 점점 안 하고 왔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 것을 보고서 저는 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사과하시고 사퇴하세요! 그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도리이고요. 민주적 질서를 하는 도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창피한 줄 아십시오, 진짜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김병주 위원** 저도 공직에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주관적인 판단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창피한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게 장관과 차관님들이 이 모양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 태도에 대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무원법 성실의무도 위반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 노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비상계엄 해제 국회에서의 의결과 비상계엄 해제의 개념 구별을 안 하고 계세요. 국회에서 의결했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는 의결하면 대통령은 당연히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몇 번을 출석하셨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단답 질문을 요구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답 질문을, 아까 그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나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금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으니 그것 기다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얘기 못 한다, 이 논거는 지금 제가 볼 때 한 수십 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5초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증거채부가 어렵고……

그런 논거를 듣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서 끊으면 끊는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제재 좀 해 주십시오. 출석해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하면 안 되는 역할을 구분을 못 해요. 무슨 토론하러 나오신 줄 알아요.

○**김병주 위원** 태도가 아주 글러먹었어.

○**위원장대리 박성준**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 질타하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다시 3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위원장께서는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사가 검토해야 된다는 이 절차를 모르셨지요? 아까 모르고 계시던데, 오늘 아신 거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물론 형식적인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잠깐만 세워 주십시오.

알았냐 물랐느냐에 대한 대답이 ‘알았다’와 ‘몰랐다’ 말고 뭐가 있습니까? 몰랐다고 했을 때 왜 물랐느냐고 물어보면 그때 ‘이러이러해서 몰랐습니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왜 규칙을 모르세요? 절차대로 하고 규칙을 지키신다면서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렇지요.

○**노종면 위원** 국회의 규칙은 이겁니다.

인권위 운영규칙 제6조를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과거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 그걸…… 그랬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간사께서 분명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것 참 진전이 안 되네요, 진전이 안 돼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주무 부서에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시지요.

○**노종면 위원** 간사님 나오세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간사 말고 주무 부서 국장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노종면 위원** 간사님 나오세요.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운영규칙 제6조에는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규칙을 잘못 띄웠습니까? 이것 인권위 운영규칙 아니에요? 저기서 ‘검토하고’는 의무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검토해서’, 검토는 의무고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요구는 ‘할 수 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토는 의무예요. 절차적인 의무입니다.

인권위 운영규칙을 인권위원들 그리고 간사가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원론적인 답변 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노종면 위원**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노종면 위원** 간사님!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예.

○**노종면 위원** 아까 검토 안 하셨다고 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예,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를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셨다고 그랬지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예.

○**노종면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검토를 해야 되고 보완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보완의 대상이 형식입니까? 형식에 불과합니까? 내용까지 보라는 취지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은 검토를……

○**노종면 위원** 아니, 이 규칙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간사시니까. 간사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간사가 이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출발입니다.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규칙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검토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노종면 위원** 검토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해당 부서를 믿고 안 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형식적 검토를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여기 규칙에 해당 부서가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사가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여기 규칙을 안 지키신 것 맞지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저희는 형식적인 내용만 검토를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안 지키신 것 맞지요?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송호섭** 예.

○**노종면 위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심각한 절차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위원장님 아까 계속 절차대로, 규칙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저도 매우 답답했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상정이 되더라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성준 1분만 더 주세요.

○노종면 위원 상정이 되더라도 설마 통과시키시지는 않겠지, 지금은 그것만을 기대해야 하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각한 절차적인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검토를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검토가 끝난 다음에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여기 수정할 내용이, 그러니까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가 보일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 문건 16페이지에 보면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탄핵소추 철회 등이에요. 탄핵소추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지요? 그런데 설사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도 철회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 아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노종면 위원 이건 심각한 어떤, 형식으로 쳐도 좋습니다. 내용상 형식적인 흡결이에요. 이건 법원 용어, 재판 용어를 동원하자면 각하 사유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각하 사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시고, 지시하시고 절차가 준수되는지를 확인하신 뒤에 그다음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권고할 때는 여태까지 기관장한테 권고를 해 왔습니다. 아마 그런 형식이고.

여하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월요일 날 3시 회의인데 그 전에 상임위원들끼리라도 먼저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규칙을 지킬지 여부도 상임위원하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우리가 규칙 위반이라 하더라도 중대하냐…… 중대하면, 위반이 중대할 경우에는 당연히 상정에 하자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경미할 때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의결을 한 국회 기관장이 존재합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종면 위원 기관장이 존재합니까? 국회의장이 기관장이에요, 국회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우리가 다른 데 권고할 때는 항상 그렇게 권고를 해 왔습니다. 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낼 때 또는 권고할 때는 국회의장한테 저희가 해 왔습니다.

○**노종면 위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대부분, 그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최근에도 국회의장 이렇게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지금 정확한 사례를 알고 하시는 겁니까, 옆에서 이충상 위원께서 조언해 주시니까 따라 하시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최근에도 우리가 상임위나 이런 데서 법률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한테.

○**위원장대리 박성준** 정리해 주시고요.

○**노종면 위원**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확인하셔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노종면 위원** 지금 제출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최근에 의결한 것도 국회의장한테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위원장대리 박성준**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상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위원들의 지적 아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것을 상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요.

○**노종면 위원** 아니, 절차적인 하자가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해 놓고 상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니, 지금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아니, 안건 상정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성에 대한, 규칙의 위반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니까..... 오늘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됐으면 인권위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그걸 회의 전에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으로 서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5분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주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인권위 을사오적 김용원·한석훈·이한별, 철회하고 사퇴하셨지만 강정혜·김종민 위원까지 모두 내란에 동조한 부역자들입니다. 오늘 속기록을 통해서 역사에 꼭 남겨야 되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무시무시한 반인권적인 포고령을 보고도 인권위원회이라는 분께서 어떤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참담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윤석열 방어 안건에 대한 인권위 결재 과정,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기도 합니다. 결재 과정을 재구성한 PPT입니다.

1월 8일 저녁 위원장한테 대면보고가 됐고요. 위원장은 하루도 안 지나서 다음 날 11시 30분에 결재했습니다. 내용을 좀 잘 검토하셨냐고 여러 위원님들도 물어봤는데 검토했다고 하셨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읽어 봤다고 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답변했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읽어 봤다고 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읽어 보시고도 이런 내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상정을 이렇게 잽싸게 빨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안건도……

○**서미화 위원** 질문한 것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동일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미화 위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인권위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托 글입니다. ‘부끄러운 일터로 숨기며 살고 싶지 않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직에서 내려오면 그만이지만 직원들의 명예는 그렇지 않다’, 이런 비托 글 읽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어땠냐고 질문하니까 아는 게 없으신 것 같았어요, 아까. 지금 죄 없는 인권위 직원들 내란 공범으로 몰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준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시간 좀 꺼 주세요.

이석준…… 나오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나왔습니다.

○**서미화 위원** 전원위에 안건이 상정되려면 절차상 사무처에도 보고되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렇습니다.

○**서미화 위원** 이번 안건 어떤 결재 라인으로 사무처에 올라왔어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소관 부서에서 접수가……

○**서미화 위원**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조사총괄과입니다.

○**서미화 위원** 조사총괄과예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서미화 위원** 그리고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소관 부서에서 접수가 보고되면 의사 지원 부서……

○**서미화 위원** 사무총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통상 위원들이 상정 안건을 내면 운지과에서 받고 사무총장, 사무처로 가서 문제 있는 것들은 검토의견도 달아서 위원장한테 보고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서미화 위원** 간사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통상 해요. 그런데 왜 이건 조사총괄과로 간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조사총괄과로 간 것은 누가 지시한 겁니까? 사무총장님, 알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누가 지시했어요? 누가 조사총괄과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제가 알기로는……

○서미화 위원 위원장이 지시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여러 국가기관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후속 조치를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서미화 위원 아니, 여태 말씀드렸는데…… 인권위원들이 상정을 해 가지고 운지과로 보내서 전원위로 가야 될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조사총괄과로 갔냐고 묻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보통……

○서미화 위원 인권위원들이 이렇게 할 때 여러 과 안 결친 안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알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공동 발의한……

○서미화 위원 누가 시킨 겁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누가 시켰어요, 조사총괄과로 보내라고? 김용원 위원이 시켰어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하셨던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소관 부서에서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미화 위원 김용원 위원이 혹시 위원장한테 시켜서…… 위원장님의 시킨 것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사무총장님, 그러면 이 안건 보고받고 위원장님께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무처에서는 접수가 되면 접수 보고의 형식입니다.

○서미화 위원 사무총장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국장급 모아서 검토의견 논의하는 것 모르세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위원님, 그래서……

○서미화 위원 사무총장! 국장들 모아서 회의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 말씀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위원님, 이 사안은 해당 안건이기 때문에 그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사 부서로 가게 됩니다.

○서미화 위원 사무총장님, 제가 말하는 것 모르세요? 이런 안건이 안건이랍시고 들어왔는데 사무총장이 20년 동안 인권위에 근무하면서 이런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위원님, 저도……

○서미화 위원 그것이 국장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검토의견 해 가지고 인권위원장한테 보고할 수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위원님……

○서미화 위원 이런 안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런 여러 가지 우려는……

○서미화 위원 말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한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저도 우려된 것은 마찬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절차가 규정이……

○**서미화 위원** 사무총장님!

똑바로 일하세요. 국장들하고 논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아니, 위원님……

○**서미화 위원** 안 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서미화 위원** 지금까지 사례들 보시면 이런 심각한 반인권적인 문제를 인권위원이라는 자들이 올렸어요. 그러면 인권 감수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인권위 직원들이, 오죽하면 지난주 월요일 날 인권위 직원들이 와서 피켓 들고 시위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사무총장이 그러한 일을 제대로 판단하고 위원장 보좌하고 직원들 같이 논의해서 어려운 의견은 같이 의견 내서 이런 거 상정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저지를 했었어야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런 우려는 저도 같이……

○**서미화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서미화 위원** 맞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서미화 위원** 사무총장, 그러면 사과하세요,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아니, 위원님……

○**서미화 위원** 20년 동안 같이 일한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안건을 국장들 모아서 논의도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앞의 사무총장들은 전부 논의하고 같이 해서 이상한 안건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의견 해서 보냈었어요. 몰라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거 다 저희 상의드렸고요.

○**서미화 위원**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서미화 위원** 누구하고 상의드렸어요? 국장들하고 상의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고 그런 우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상의한 회의 자료 있습니까? 검토의견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회의를 무슨 기록을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서미화 위원** 여보세요, 사무총장님. 장난합니까, 지금? 국가기관에서 회의하는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그거 회의한 겁니까? 그것을 회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위원님, 저희가 계속……

○**서미화 위원** 사무총장님! 각성하세요. 사과하세요,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사표 내고 그날 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런 일이 인권위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사무총장도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승진해 가지고 부역자 된 거예요, 지금. 똑바로 알고 제대로 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각성하시고 사표를 내시든지, 각성하고 제대로 하든지 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서미화 위원** 정말 사무총장이……

○**위원장대리 박성준** 서미화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서미화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남규선 위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성준** 아니, 서미화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서미화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저도.

○**위원장대리 박성준** 1분만 더 드리고 마무리해 주세요.

○**서미화 위원** 남규선 위원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예, 나왔습니다.

○**서미화 위원** 남규선 위원님이 대통령 헌정질서에 대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 상정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예,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서미화 위원** 이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권조사 왜 기각됐는지, 직권조사는 왜 안 하기로 했는지 그때 상황을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전원위원회에 직권조사 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 6명의 위원이 동의를 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누가 가장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이런 인권침해 사건을 당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은 직권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더 관심을 갖고 인권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을 재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사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미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안 하기로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입니까? 김용원 위원입니까,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밤에 이런 질의 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가 각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다시 논의하셔서 직권조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권위원장도 직권 조사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이제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요.

○**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김용원 위원님 저쪽으로 나오시지요.

발언 내용만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굳이 다른 말씀 붙이지 마세요.

제가 회의록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제가 ‘왜 막냐? 왜 국회의원들이 안창호 위원장 만나러 가는 걸 막냐’ 했더니 ‘비키지 않았을 뿐 길을 막은 것은 아니다. 왜 막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맞습니다.

○**신장식 위원** 안창호 위원장님, 아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신장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키지 않았을 뿐 막은 게 아니다’, 한 술 더 떠서 ‘왜 막으면 안 되냐’.

저는 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설립돼 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확립되는 것이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신장식 위원님, 저에 대한 질문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신장식 위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질문 안 하실 거면 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장식 위원** 거기 서 계세요, 또 질문할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질문하시면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신장식 위원** 서 계시라고요! 참, 진짜……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해석도 안 돼요. ‘비키지 않았을 뿐

막지 않았다. 왜 막으면 안 되느냐', 길바닥에서 아무나 그냥 비키지 않고 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무법천지인가요? 국회의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도 인권위 상임위원이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되고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포고령 1호에 보면 국회를 정지시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언론·출판의 자유도 제약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것이 포고령 1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췄을 때 이것은 인권침해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징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과 관계없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포고령 1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인권위의 설립 취지로 봤을 때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판단은 인권위원장님께 제가 충분히 여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신장식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도 들어가 주시고요.

○**신장식 위원** 들어가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신장식 위원** 들어가시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국회의원들께서 공직자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행위, 적절치가 않습니다.

○**신장식 위원** 들어가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질문하신다고 했잖아요.

○**신장식 위원** 국회의원 길 막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들어가시라고!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질문하신다면서 왜 질문 안 하는 거고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까?

○**신장식 위원** 충분히 질문했고 시간 지났어요. 들어가시라고요. 계속 서 있고 싶으면 계속 서 있으셔도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신장식 위원** 본질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지.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장식 위원** 길 막지 마세요. 안타깝고 부끄러우시다잖아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글쎄, 사정을 잘 모르시겠지요.

○**전용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잠시만요.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장으로서 조직의 리더십을 좀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인권위원장께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조직의 기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직의 기강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께서 김용원 위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태도나 모습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염중 경고해 주시고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사무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정회 때 보니까 운영규칙 6조가 형식적인 요건만 본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렇게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만 봐서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런데 통상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용기 위원** 원래 이렇게 운영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위원회……

○**전용기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당부를 저희 사무처에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저도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무처에서 제안한, 제출한 안건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전용기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간사가 검토하고 보완 필요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게 그러니까……

○**전용기 위원** 들어 보십시오.

간사가 아무런 제재나 검토 요청조차 하지 않았고 형식 요건만 갖춰서 봤다, 이것 지금까지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출속으로 운영됐다라는 반증입니다. 왜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1페이지, ‘기물 파손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국회 창문 깨지고 군대가 총을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아직도 밑에 가면 복구를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경미하다, 본인 주장을 써 놓으셨고요.

두 번째, ‘국회가 야당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서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는 것은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 인권위 입장입니까? 이것 8페이지였고요.

9페이지, ‘헌법재판소가 비록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위가 헌법재판소 위에 있습니까?

하나 더 읽어 드릴까요? 2번, 더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

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계엄선포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이런 법리는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런 법률을 부정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용하는 듯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써 놓으셨습니다.

이것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권고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위원들의 발의 내용이라고는 하나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그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께서 그날 회의를……

○**전용기 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한쪽의 주장만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요건이 부실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조차 내지 않으면 운영규칙 6번 이것 왜 필요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보완적으로 의사 절차상 위원장님께서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절차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형식만 갖춰 놓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건이 처리되면, 지금 저렇게 반발하시는 이유는 내란 선전으로 고발당하셨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 총장께서 말씀하신 과정을……

○**전용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동의하시는 바예요? '헌법재판소가 비록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데 이 내용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식도 있고 법률가들이고 대부분……

○**전용기 위원**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래서 그런 건 다 걸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위원장님께서 사실 사무처의 장 아니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무총장님 계시지만 다 위원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형식적인 내용만 거른다고 해 가지고 전원위원회라는 아주 권위적인 합의체에 올라오는데 이따위 내용이 올라오는 것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아니냐, 헌법재판관을 했던 위원장님께는 굉장히 명예훼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이게 아마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충실한, 안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할 일이나 이런 걸 좀 더 명백하게 하는 그런……

○전용기 위원 그러면 운영규칙 6조 개정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용기 위원 형식적이라는 내용을 넣든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질의하신 위원님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현안질의를……

○김병주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대리 박성준 자료 요구 1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비상계엄 당시에 여기 계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알았고, 각 상임위원회하고 여기 사무처 고위직들요. 그리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걸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12월 4일 날 9시에 첫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첫 회의 내용이 뭐였는지 회의 결과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때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 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 비상계엄 때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오시고 국회의원들은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는데 인권위가 이때 나서서 계엄 때 가장 인권이……

1분만 더 주세요.

유린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고 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또 비상근무체계, 이런 비상 상황에는 하게 돼 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도 위반을 했습니다.

간사님, 다시 한번 위원장한테 정중히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 고발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용원 상임위원님은 지금 끝까지 태도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제59조도 위반하고 국회법도 위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발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1분만 주십시오.

오늘 현안질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 중요한 인권위 고위공직자들의 역할인데요. 우리 이석준 사무총장이 윤석열 안전과 관련해서 의견을, 본인의 의견이든 아니면 국장들과 상의한 의견을 위원장께 전달을 했는지 여부, 아니면 안하고 그냥 본인도 결재를 했는지 그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상황을 말씀 좀 드리면 오늘 말씀한 내용 중에 비상계엄, 특히 내란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 상황이었는데 국가인권위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준 사무총장이 윤석열 보장권과 관련된 의견 전달을 했는지,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란과 관련된, 특히 인권침해가 상당할 수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저희가 12월 11일 날 내기는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보장권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인지를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추후 조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국회법 위반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많이 나오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말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가 과연 지켜야 할 인권은 지키고 지키지 않고 질타를 해야 될, 인권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이라든가 제대로 나오는 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오늘 언성까지 높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이지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예, 그때……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고 만약에, 국가인권위가 정말 최종 인권의 보루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현명한 판단과 조치가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강유정 고민정 김병주 김성희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박찬대 서미화 신장식
윤건영 윤종군 이소영 전용기 정진욱 천하람 추미애

○첨가 위원(1인)

양문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남규선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김용원

사무총장 이석준

기획조정관 조영호

정책교육국장직무대리 윤채완

침해조사국장 서수정

차별시정국장직무대리 이수연

군인권보호국장 박홍근

교육협력심의관 안성율

운영지원과장 송호섭

【보고사항】

○의안 회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4)

이상 6건 1월 9일 회부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4)

1월 1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0.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7)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2025. 1. 10. 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외 186인 발의)
(의안번호 2207437)

이상 2건 1월 13일 회부됨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2025. 1. 14. 박형수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748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9)

이상 2건 1월 15일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4)

이상 3건 1월 1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5)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421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 17. 의장 제의)

1월 17일 회부됨